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16일

을지로동장 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환	이 *환 1960-03-07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(방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16
박 *석	박 *석 1963-04-17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(방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16